

일반심리사 시험 응시 유의사항

(사) 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법위원회

◆ 시험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확인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 관련

-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시험당일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시험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자기 책상의 위에 놓아야 한다.
-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신분증 외에 어떠한 물품도 올려둘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 환불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 시험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다. **퇴실 후에는 재입장할 수 없다.**
-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본인 확인 절차 관련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부정행위 처리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처리하며, 자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안내가 나간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라. 문제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경우

마.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바. 시험 후에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

-반입 금지 물품: 각종 전자기기[휴대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